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
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

『서울특별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
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

지원 체계의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

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규정하여

장애인 가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.

□ 또한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

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의 관련 기관과의

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해

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.

□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.

안 제4조의2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
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신설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
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
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
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
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